



## 아시아계미국인의 법적 보호와 교육을 위한 기금

99 HUDSON STREET, 12th FL, NEW YORK, NY 10013-2815 212.966.5932 팩스 212.966.4303

### 추방유예신청(DACA) 이란?

서류 미비 청소년들 가운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추방을 막기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서류 미비 젊은이 추방 유예” 대통령 행정 명령이 2012년 6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청소년들은 추방유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방 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 요건	잠깐! 아래의 이민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면
아래의 요건들을 갖추었다면 추방 유예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세 이상에서 30세 이하;</li> <li>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자;</li> <li>2007년 6월 15일 이후로 계속해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li> <li>2012년 6월 15일 당시와 현재 신청시점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li> <li>2012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였거나, 또는 2012년 6월 15일 현재 이민법상 신분이 만료된 상태인 자;</li> <li>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했고, 또는 검정고시(GED)를 통과 했거나, 전문 대학 수료 혹은 학사 학위 소지자, 미국 해안 경비병 혹은 미군에서 명예 제대한 자</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을 초과하는 징역 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가 있는 경우;</li> <li>➢ 6일에서 1년 사이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가정 폭력, 성범죄, 착취, 강도, 불법무기 소지 및 사용, 마약 배포 및 판매,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등의 심각한 경범죄가 있는 경우 혹은 실제로 징역을 살았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li> <li>➢ 3번 이상의 경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혹은</li> <li>➢ 국가 안전 혹은 대중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 경우;</li> </ul>
<b>추방유예 신청서는 <a href="http://www.uscis.gov/childhoodarrivals">www.uscis.gov/childhoodarrivals</a> 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b>	

### 혜택

추방유예는 신청자가 추방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며, 추방 유예를 신청 할 때 노동허가도 함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운전 면허증과 소셜 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방유예가 승인되면, 경우에 따라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 제약 및 주의사항

추방유예 조치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며,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린 나이에 미국에 온 불법 체류 이민 청소년을 구제하는 드림 법안이 미의회를 통과하거나 이민 개혁이 이루어 져야 가능합니다. 추방유예가 승인되면 2년간 추방 절차로부터 보호되며,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날 때쯤 이민국(USCIS)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중대한 이민법 위반이 있다면, 미 정부는 추방 절차를 시행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신청양식과 신청 방법을 보시려면 이민국 웹사이트 [www.uscis.gov/childhoodarrivals](http://www.uscis.gov/childhoodarrivals) 를 참조하십시오. 접수 하시려면, 반드시 추방유예신청양식(I-821D)과 증빙서류, 노동허가 신청서와 워크 시트(I-765 와 I-765WS), 2 장의 여권사진을 함께 제출 하십시오.

증빙서류는 신청 필수 자격요건 6 항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에 관한 정보는 “증빙자료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서 접수처**

신청 접수처는 신청자의 주소지에 따라 다르므로, [www.uscis.gov/childhoodarrivals](http://www.uscis.gov/childhoodarrivals) 를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신청비용**

지원 서류 신청료는 없으나, 노동허가 신청비와 지문채취를 위해 이민국(USCIS)에 신청 수수료 \$465 - 지불처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을 동봉하여야 합니다.

## **신청후 진행 절차**

추방유예신청서 (I-821D) 접수 후, 신청자는 수령확인서를 받게 되며 지문채취 예약을 해야 합니다. 신원 조회 절차를 걸친 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이민국(USCIS)은 신청자에게 최종 승인 결과를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가 요구 될 수 있습니다. (1) 이민국(USCIS) 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검증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또는 (2) 품질 보증 절차를 위해 신청자중 무작위로 선별하여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추방유예신청이 이민국에 의해 거부되는 경우**

추방유예 신청 거부에 대한 항소는 없으나, 신청자는 1-800-375-5283 으로 전화를 걸어 “검토”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무료 법률 상담 및 지원**

AALDEF (아시아계 미국인의 법적 보호와 교육을 위한 기금)은 젊은 청년들에게 법률 상담과 법정 대리권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법률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ALDEF 는 또한 서류 미비 아시아계 미국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단체를 통해서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며 합법적인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홈페이지 <http://aaldef.org/obamas-dream-act-directive-on-deferred-action----faqs.html> 를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상담을 예약을 원하시거나 청소년 단체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AALDEF 앞으로 이메일: [info@aaldef.org](mailto:info@aaldef.org) 또는 전화 212-966-5932 주시길 바랍니다.

## **증빙서류 체크리스트**

- 출생국에서 발급한 여권
- 출생증명서
- 출입국카드 (I-94 Form) 또는 or 미국 출입국 증명
- 여행관련 기록
- 재정 관련 기록 예)은행계좌기록, 세금보고서
- 각종 고지서
- 학교 관련 기록
- 고등학교 학위증, 검정고시(GED) 합격증
- 성적표 혹은 성적증명서
- 의료 관련 기록
- 군대 관련 서류 (인적사항, 건강)
- 최종 통보 및 추방 명령 혹은 이민 관련 서류
- 범죄 기록 및 범죄 검거에 관련된 법원의 처분관련 서류
- 지역 단체 지원 편지
- 기타 도움이 될 만한 서류들 예) 지역사회 유대, 참여도 및 수상경력들을 나타내줄 수 있는 서류